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2027년 성평등가족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시스템 위탁운영
-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시큐아이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방화벽 및 TAMS, DDoS 등 보안장비)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18,008,000원_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09월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시큐아이 (인)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성평등가족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시스템 위탁운영
-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지니언스(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네트워크 접근제어)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7,656,000원_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09월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지니언스(주) (인)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2027년 성평등가족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시스템 위탁운영
-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누리인프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백본 및 네트워크 스위치)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5,180,000원_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09월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누리인프라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2027년 성평등가족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시스템 위탁운영
-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디노텍

제1조(목적)

이 협약은 (AhnLab 보안제품)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43,842,040 원_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09월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디노텍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성평등가족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시스템 위탁운영
-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모니터랩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유해사이트차단 및 SSL가시화)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24,948,000원_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09월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모니터랩 (인)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2027년 성평등가족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시스템 위탁운영
-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시큐레이어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및 업무포탈)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66,000,000원_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09월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시큐레이어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2027년 성평등가족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시스템 위탁운영
-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씨앤이정보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백업장비)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8,764,800원_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09월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씨앤이정보 (인)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성평등가족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시스템 위탁운영
-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원스टे크넷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네트워크 침입방지시스템_IPS 및 TMS)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48,576,000원_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09월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원스टे크넷 (인)



[붙임 10]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성평등가족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시스템 위탁운영
-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펜타시큐리티(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웹방화벽)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7,760,600원_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09월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펜타시큐리티(주)



[붙임 10]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성평등가족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시스템 위탁운영
-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휴네시온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망연계 및 서버접근제어솔루션)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2,210,000원_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09월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휴네시온

